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8.(목) 11:00 < 4.19.(금) 조간 > 배포 2024. 4. 18.(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❸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❹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 중동 원유 수입비중 : ('21) 59.8% → ('22) 67.4% → ('23) 71.9%

** 非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內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 환급(年 1,700억원 규모)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김기열 (044-203-52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

2.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 및 사용내역 보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 규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물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

*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

3.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지정

□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4. 재난상황 대응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7.12월까지 3년 연장**